

<의안번호 제2007-31호>

거창군박물관설치 및 관람료장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. 9. 18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7. 9. 20.

### 2. 개정이유

거창박물관에 입장할 때 관람료를 받고 있으나 연간수입이 소액이어서 관람권 인쇄비 등 징수비용을 제하고 나면 세입효과가 매우 낮으므로, 박물관의 사회 교육적 측면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화 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·문화 공간으로 개방하고,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“거창박물관조례”로 변경함.
- 나. 목적을 개정된 조례에 맞게 새로이 규정함(안 제1조).
- 다.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.

(용어의 정의, 관람절차, 관람료 징수방법, 관람료 면제조항 등)

라. 박물관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규정함(안 제5조).

마. 명예관장 제도를 없애고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13조).

○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·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

○ 위원은 박물관담당 부서장과 박물관운영에 식견 있는 학계, 문화·예술계, 지역인사 중 군수가 위촉, 임기는 2년, 연임 가능함

바. 박물관자료의 취득, 구입, 기증, 기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).

사. 관람자의 행위제한, 입장제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(안 제10, 제11조).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, 제12조,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07. 7. 31. ~ 8. 25.)결과 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2006.11.30.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박물관 관람객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연간 관람료 수입액은 소액이므로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화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- 그러나 입장료 수입, 관람객 등 무료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참고자료

- 관련법령 발취

### [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]

제7조 (운영 위원회)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·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(각 지방분관을 포함한다)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 (설립과 운영)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·관리·보존·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5조 (관람료와 이용료)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,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.

②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,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[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]

### 제6조 (박물관·미술관 운영 위원회)

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·미술관 운영 위원회(이하 "운영 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·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·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·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·미술관의 장이 된다.

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박물관·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박물관·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
3. 박물관·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
4. 다른 박물관·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